

2026. 10. 2.

수 신 : 의 장

제 목 :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위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첨과
같이 발의합니다.

첨 부 : 조례안 1부. 끝.

발 의 자 : 유 양 순 의원 (서명 또는 인)

여 봉 무 의원 (서명 또는 인)

이 시 훈 의원 (서명 또는 인)

노 진 경 의원 (서명 또는 인)

강 수 은 의원 (서명 또는 인)

김 중 보 의원 (서명 또는 인)

이 미 자 의원 (서명 또는 인)

박 희 연 의원 (서명 또는 인)

신 기 수 의원 (서명 또는 인)

김 호 준 의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신기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2026. 10. 2.

발 의 자: 신기수·유양순·여봉무·
이시훈·노진경·강수은·
김중보·이미자·박희연·
김호준 의원

1. 제정 이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정 정보를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구민에게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소통을 강화하여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증진하고 체계적인 의정 홍보를 추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가. 의정, 홍보매체, 소셜미디어, 콘텐츠 등에 관한 용어를 정의함. (안 제2조)
- 나. 의정 정보를 정확하고 알기 쉽게 제공하고 구민의 알 권리와 의정 참여를 증진하는 등 의정 홍보활동의 원칙을 규정함. (안 제3조)
- 다. 누리집, 소셜미디어, 홍보영상, 홍보간행물, 옥외광고물, 각종 행사·이벤트 및 홍보물 등을 활용한 의정 홍보 방법을 규정함. (안 제4조)
- 라. 구민 소통 및 참여 활성화, 구민 편익 증진, 의정 소식 및 의정활동과 관련된 구정 주요 사항 등 홍보매체에 게재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함. (안 제5조)
- 마. 의회 누리집의 구축·운영 및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및 제7조)

바. 주요 의정활동과 정책 등의 홍보를 위한 홍보영상의 제작·편집·송출 및 게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사. 홍보매체의 자료관리 및 이용자가 등록한 게시물의 삭제 등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9조)

아. 구민의 의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의정 홍보를 강화하기 위한 공모·참여 행사의 운영과 경품이나 시상금품 등의 제공 및 사전 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0조)

3. 참고 사항

가. 관련 법령

1) 「지방자치법」 제26조(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제28조(조례), 제58조(의장의 직무)

2)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3)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5) 「저작권법」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

나. 예산이 따르는 사항: 안 제4조(홍보 방법), 제10조(공모·참여 행사 등)

다. 입법예고: 2026. 9. 4. ~ 9. 23.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정 정보를 구민에게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구민과 소통함으로써 의정활동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참여를 증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정”이란 「지방자치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입법,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조사 등 각종 활동을 말한다.
2. “홍보매체”란 의정 정보를 서울특별시 종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전달하는 수단으로 홍보간행물·누리집·소셜미디어·영상매체 등을 말한다.
3. “소셜미디어”란 인터넷 이용자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공유하여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온라인의 양방향성 인터넷 매체를 말한다.
4. “콘텐츠”란 의정 홍보를 위하여 제작·배포하는 문자·부호·음성·음향·사진·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제3조(홍보활동의 원칙)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정 정보를 정확하고 알기 쉽게 제공하여 구민의 알 권리와 의정 참여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홍보활동을 할 때 의회민주주의, 지방자치 및 사회통합에 대한 구민의 이해 증진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장애인이 의정 정보에 접근하고 이용하는 데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홍보 방법) 의장은 의정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다.

1. 누리집 설치 및 운영
2. 소셜미디어 운영
3. 홍보영상 제작 및 배포
4. 홍보간행물 제작 및 배포
5. 옥외광고물을 활용한 홍보
6. 의정 홍보를 위한 각종 행사 및 이벤트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념품 등 홍보물 제작 및 배포

제5조(홍보 내용) 의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홍보매체에 게재할 수 있다.

1. 의정활동과 관련한 구민 소통 강화 및 구민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경제, 문화, 안전, 관광, 교통, 환경, 교육 및 생활정보 등 구민 편익 증진 사항
3. 의정 소식 및 의정활동과 관련된 구정 주요 사항
4. 그 밖에 구민에게 유익한 정보 또는 의정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누리집 설치 및 운영) ① 의장은 의회 누리집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의장은 누리집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보보안 및 유지보수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효과적인 의정 홍보를 위하여 누리집을 외국어로 번역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소셜미디어 운영) 의장은 구민과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수시로 의정 콘텐츠를 제작·편집하여 소셜미디어에 게시할 수 있다.

제8조(홍보영상 등 제작) 의장은 의회의 주요 의정활동과 정책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제작·편집하여 송출하거나 게시할 수 있다.

제9조(자료관리) ① 의장은 홍보매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홍보매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홍보매체에 등록한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게시물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국가 안전을 해치거나 보안 관련 법령에 어긋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 보호 등에 어긋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선거운동 또는 특정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4.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종교·인종·성별·장애 등을 이유로 개인 또는 집단을 비방하거나 차별·혐오를 조장하여 홍보매체의 운영 목적을 현저히 해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5. 허위사실로 특정 기관·단체 또는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6.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7. 상업성 광고 등 영리 목적이 있거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8. 욕설·음란한 표현 등 홍보매체의 정상적인 운영을 현저히 해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9. 성차별적 표현 등으로 양성평등 문화를 저해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10. 도용된 계정, 허위 정보 입력, 반복 게시 프로그램 사용 등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게시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11.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상습·반복적으로 게시하여 홍보매체의 정상적인 운영을 현저히 방해하는 경우

제10조(공모·참여 행사 등) ① 의장은 구민의 의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의정 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모 또는 참여 행사 등을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의정 사업 등에 관한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려는 경우
2. 세미나, 기념식 등 의회가 주최하거나 운영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
3. 의정 홍보 효율성 향상 및 구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경우
4. 그 밖에 의정을 홍보하는 데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경우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공모 또는 참여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 등의 경품이나 시상금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상품권 등의 경품이나 시상금품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 그 종류, 제공 기준 및 절차 등을 사전에 홍보매체를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개설하거나
운영 중인 홍보매체는 이 조례에 따라 개설·운영 중인 홍보매체로 본다.